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6. 14 (화) 평창군수(재무과장)

나. 회부일자 : 2005. 6. 20(월)

다. 상정일자 : 2005. 6. 22(화) 제12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 6.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과장 김장래)

가. 제안이유

- 200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 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계	결손 처분	이 월
계	202,285	287,224	301,065	293,413	968,495	961,805	6,690
일반 회계	167,729	223,761	237,223	232,870	628,822	625,094	3,728
특별 회계	34,556	63,463	63,842	60,543	339,673	336,711	2,962

○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202,285	287,224	234,600	209,575	64,608	13,040
일반 회계	167,728	223,761	193,054	180,681	33,755	9,323
특별 회계	34,556	63,463	41,545	28,893	30,853	3,716

○ 기금증감 및 현재액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2004 년도		'04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증	감		
계	2,537	587	337	2,787	250
재해대책기금	409	185	267	326	△82
재난관리기금	130	29	-	158	27
저소득주민주녀장학기금	102	4	5	102	△1
노인복지기금	849	100	35	914	65
장애인복지기금	578	-	18	561	△17
평창군장학기금	254	112	12	354	100
여성발전기금	212	157	-	369	157

○ 채권증감 및 현재액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2004 년도		'04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증	감		
계	2,960	1,460	1,284	3,136	176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2,960	1,460	1,284	3,136	176

○ 채무증감 및 현재액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2004 년도		'04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증	감		
계	15,945	3,152	4,913	14,184	△1,761
일반회계	5,174	3,152	3,261	5,065	△109
특별회계	10,771		1,652	9,119	△1,652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2004 년도		'04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증	감		
계	84,162	35,646	799	119,009	34,847
행정재산	50,124	35,290	102	85,312	35,288
보존재산	-	-	-	-	-
잡종재산	34,038	356	697	33,697	△341

○ 순세계 잉여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2003년도	8,545	7,414	1,131	
2004년도	18,829	18,113	716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I. 세입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일반회계 수납액**은 2,934억 1,300만원으로 예산액의 151%이고 징수결정액은 2,372억 2,300만원으로 예산액의 117%에 달하였으며 징수결정액대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1%입니다.

- 지방세 수납액은 151억 841만원으로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순으로 수납되었으며
- 세외수입 수납액은 739억 5,86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공유 재산 임대 수입, 수수료 수입 순으로 징수되었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702억 6,60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양여금 145억 5,54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9억 1,310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지난해보다 **5억 2,171만원이 증가된 45억 5,330만원**으로

- 증가된 이유로는 고질체납액의 증가와 재산압류, 소송계류, 무재산,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특별한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나. 특별회계 세입부분

○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특별회계로 실제수납액은 605억 4,27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5.4%이며 징수결정액은 638억 4,21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0.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94.8%임

-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지난해보다 31억 6,065만원이 증가된 32억 9,942만원으로
 - 미수납액의 주요원인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 보조금이 23억 4,900만원으로 총 미납액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내용으로는 기금지원사업의 공사 진행이 미진함에 따라 한강 수계관리기금 자금이 미송금되어 2005년도로 이월되었음.

II. 세출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출부분

-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237억 6,109만원에 대하여 1,806억 8,1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337억 5,539만원과 집행잔액 93억 2,383만원이 발생하였음
 - 집행액 1,806억 8,186만원은
 - 일반행정비 313억 8,562만원, 사회개발비 564억 5,471만원, 경제개발비 913억 7,681만원, 민방위비 11억 9,78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억 4,493만원임
 - 이월액 337억 5,539만원중
 - 명시이월 60건 210억 2,728만원은
 봉평소방출장소 부지매입, 평창지동봉 가옥보수사업, 지장암 법당보수사업, 상원사단청사업, 체육시설확충사업, 등매보건 진료소 시설개선사업, 계촌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등으로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이 주요원인이고

- 사고이월 35건 55억 9,585만원은
면온초등학교급식시설개축, 지역정보화지원사업, 전산실전원
공급시설공사, 천연동굴보호시설 설치사업, 마하경로당 신축
공사 등으로 대부분 동절기공사중지, 보상협의 지연이 주된
원인입니다.
- 계속비 이월은 7건 71억 3,225만원으로
민물고기생태관건립, 소각로설치공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입니다.
-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6,815만원으로서 이중 1개사업
4,6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용으로는
 - 도암면사무소 난방기 및 난방배관 보수 4,649만원으로 적법한
범위내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나. 특별회계 세출부분

- 예산현액 634억 6,330만원, 지출액 288억 9,863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308억 5,305만원, 집행잔액 37억 1,628만원임
실제수납액은 605억 4,27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5.4%이며
징수결정액은 638억 4,21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0.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94.8%임

Ⅲ.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가. 기금증감 및 현재액

-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 재난관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평창군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현재액은 27억 8,700만원으로 2003년도 25억 37백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임

기금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이며, 지출은 재난응급복구, 노인지회지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여성단체지원으로 지출되었음.

나. 채권증감 및 현재액

- 보유채권 현재액은 2003년말 현재 29억 6,059만원에서 2004년도 14억 6,024만원이 발생하고 31억 3,624만원이 소멸되어 2004년말 현재액은 31억 3,600만원임

다. 채무증감 및 현재액

- 평창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말 159억 4,500만원에서 2004년도 19억 6,100만원을 상환하여 2004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41억 8,400만원임

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2003년말 현재액 841억 6294만원에서 348억 4,700만원이 증가한
1,190억 958만원으로
 - 토지 125,754,000㎡ 1,045억 8,464만원
 - 건물 59,025㎡ 144억 2,494만원임

라. 물품현재액

- 물품현황은 2003년말 현재액 33억 2,878만원보다 12억 8,451만원이 증가한 46억 1,329만원으로 신규취득 9억 6,416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4억 5,194만원이 감소하였음.

IV. 순세계 잉여금 증감 및 현재액

- 2004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3회계년도 85억 4,588만원에서 102억 8,312만원이 증가한 188억 2,90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06억 9,793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4억 1,481만원이 감소하였음

V. 검토의견

-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총평과 같이 관련 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연찬 및 정확한 결산에 대한 의지로 계수과오는 없었으며,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도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다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은 2003년도 2,482억 2,246만원보다 6.1%가 감소한 2,329억 7,972만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20억 4,534만원, 세외수입이 34억 2,089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 3,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 이와 관련 공무원들은 지속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보전금 증액 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 또한 부동산이 있음에도 행방불명을 사유로 결손처분된 세입분과, 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가족 및 친인척과 연계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결손액을 줄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요구됨
- 또한 이월사업(명시, 사고)은 대부분 회계년도 내에 완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확정 지연,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은 실무부서의 미온적인 사업관리라 판단되므로 향후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임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심사분석과 사전평가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순세계 잉여금이 2003회계년도 비하여 102억 8,312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그 원인을 살펴보면
 - 초과세입금 91억 929만원과 인건비 13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며
 - 세목별로는 주민세 등 5개세목에 23억3,000만원, 보조금 7억 7,900만원, 과년도 수입금 16억원, 양여금 43억 5200만원 등이며,
 - 이중 양여금 43억 5,200만원은 2003년도분의 양여금이 다음 회계년도인 2004년 3월 17일과 4월초에 송금되어 2004년도에 세입처리 된 사항임
- 예산잔액중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당초계획시 적정한 예산편성과 제 2회추경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여 재편성하는 등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를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표 1부 끝.

세입 · 세출결산 총괄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 예산현액	287,224,399,470 원(전년도이월금	84,939,191,470 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93,413,124,980 원이고		
지출액은	209,575,829,585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83,837,295,395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원, 이자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원)을 공제한
			83,837,295,395 원은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22,108,945,190 원		
- 사고이월	5,654,113,070 원		
- 계속비이월	36,845,389,760 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9,839,596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29,007,779 원이다

2. 2004년도 일반회계는

○ 예산현액	223,761,093,730 원(전년도이월금	56,032,426,730 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32,870,391,512 원이고		
지출액은	180,681,865,150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52,188,526,362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원, 이자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원)을 공제한
			52,188,526,362 원은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21,027,280,660 원
 - 사고이월 5,595,854,070 원
 - 계속비이월 7,132,259,170 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0,581,906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112,550,556 원이다

3.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 예산현액 63,463,305,740 원(전년도이월금 28,906,764,740 원포함)에 대하여
 - 수납액은 60,542,733,468 원이며
 - 지출액은 28,893,964,435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1,648,769,033 원으로서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31,648,769,033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1,081,664,530 원
 - 사고이월 58,259,000 원
 - 계속비이월 29,713,130,590 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9,257,69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6,457,223 원이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 예산현액	50,126,657,130 원(전년도이월금	26,074,652,130 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47,517,055,893 원이며		
지출액은	21,405,546,465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6,111,509,428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회계별은	0원(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회계별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26,111,509,428 원은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641,000,000 원		
- 사고이월	- 원		
- 계속비이월	24,822,897,040 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9,257,69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 계잉여금은	568,354,698 원이다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852,443,000 원(전년도이월금	0 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15,732,276 원이며		
지출액은	499,139,040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6,593,236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16,593,236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영시이월 - 원
- 사고이월 - 원
- 계속비이월 - 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93,236 원이다

라.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387,239,000 원(전년도이월금 0 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89,571,485 원이며

지출액은 377,605,895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1,965,590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11,965,590 원은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영시이월 - 원
- 사고이월 - 원
- 계속비이월 - 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669,43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96,160 원이다

미.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817,698,000 원(전년도이월금 0 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88,353,947 원이며

지출액은 54,047,700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734,306,247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734,306,247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 원

- 사고이월 - 원

- 계속비이월 - 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4,306,247 원이다

바.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102,704,000 원(전년도이월금 0 원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102,774,585 원이며

지출액은 53,587,290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49,187,295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49,187,295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 원
- 사고이월 - 원
- 계속비이월 - 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187,295 원이다

사.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 예산현액 47,966,573,130 원(전년도이월금 26,074,652,130 원포함)에 대하여
- 수납액은 45,720,623,600 원이며
- 지출액은 20,421,166,540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5,299,457,060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25,299,457,060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641,000,000 원
- 사고이월 - 원
- 계속비이월 24,822,897,040 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0,588,26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028,240 원이다

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별책) 1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회계명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집행잔액	
공기업 특별회계	13,336,648,610	13,025,677,575	7,488,417,970	5,537,259,605	440,664,530	58,259,000	4,890,233,550	0	148,102,525

4.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장과 같다.

가. 세입결산 총괄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㉑	징수결정액 ㉒	수				납				비율
						액		액		액		액		
						수납총액 ㉓	과오납반환액 ㉔	실제수납액 ㉕(㉑-㉔)	미수납액 (㉑-㉕)	결손차분	다음년도 이월액	㉖/㉑	㉗/㉑	
합	계	202,285,208,000	84,939,191,470	287,224,399,470	301,065,849,234	293,550,495,226	137,370,246	293,413,124,980	7,652,724,254	961,805,364	6,690,918,890	102	97	
	계	167,728,667,000	56,032,426,730	223,761,093,730	237,223,692,822	232,979,723,402	109,331,890	232,870,391,512	4,353,301,310	625,094,640	3,728,206,670	104	98	
	지방세	13,140,118,000		13,140,118,000	17,424,930,699	15,108,412,609	75,822,930	15,032,589,679	2,392,341,020	625,094,640	1,767,246,380	114	86	
	보통세	12,347,115,000		12,347,115,000	14,828,542,139	14,161,838,879	70,914,640	14,090,924,239	737,617,900	1,606,020	736,011,880	114	95	
	목적세	493,003,000		493,003,000	671,094,370	635,979,940	3,607,770	632,372,170	38,722,200	17,810	38,704,390	128	94	
	과년도수입	300,000,000		300,000,000	1,925,294,190	310,593,790	1,300,520	309,293,270	1,616,000,920	623,470,810	992,530,110	103	16	
	세외수입	16,376,720,000	56,032,426,730	72,409,146,730	75,899,142,123	73,958,627,793	20,445,960	73,938,181,853	1,960,960,290	-	1,960,960,290	102	97	
	경상적수입	6,074,852,000		6,074,852,000	6,925,833,631	6,912,003,631	4,130,480	6,907,873,151	17,960,480	-	17,960,480	114	100	
	임시적수입	10,301,868,000	56,032,426,730	66,334,294,730	68,973,308,492	67,046,624,162	16,315,480	67,030,308,682	1,942,999,810	-	1,942,999,810	101	97	
	지방교부세	70,266,000,000		70,266,000,000	70,266,000,000	70,266,000,000		70,266,000,000				100	100	
	중액교부금													
	지방양여금	10,203,052,000		10,203,052,000	14,555,445,000	14,555,445,000		14,555,445,000				143	1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조금	4,310,000,000		4,310,000,000	4,913,102,000	4,913,102,000		4,913,102,000				114	100	
	보조금	53,432,777,000		53,432,777,000	54,165,073,000	54,178,136,000	13,063,000	54,165,073,000				101	100	
	국고보조	34,903,447,000		34,903,447,000	35,682,715,000	35,695,515,000	12,800,000	35,682,715,000				102	100	
	도비보조	18,529,330,000		18,529,330,000	18,482,358,000	18,482,621,000	263,000	18,482,358,000				100	100	
	지방채													
	특별회계	34,556,541,000	28,906,764,740	63,463,305,740	63,842,156,412	60,570,771,824	28,038,356	60,542,733,468	3,299,422,944	336,710,724	2,962,712,220	95	95	
	소계	10,504,536,000	2,832,112,610	13,336,648,610	13,483,233,325	13,026,463,065	785,490	13,025,677,575	457,555,750	457,555,750		98	97	
	상수도특별회계	10,504,536,000	2,832,112,610	13,336,648,610	13,483,233,325	13,026,463,065	785,490	13,025,677,575	457,555,750		457,555,750	98	97	
	소계	24,052,005,000	26,074,652,130	50,126,657,130	50,358,923,087	47,544,308,759	27,252,866	47,517,055,893	2,841,867,194	336,710,724	2,505,156,470	95	94	
	주력사업	852,443,000		852,443,000	852,443,000	542,684,322	26,952,046	515,732,276	336,710,724	336,710,724	0	61	61	
	의료보호기금	387,239,000		387,239,000	389,571,485	389,571,485		389,571,485				101	100	
	주민소득및생활안정	817,698,000		817,698,000	944,510,417	788,654,767	300,820	788,353,947	156,156,470	156,156,470		96	83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02,704,000		102,704,000	102,774,585	102,774,585		102,774,585				100	100	
	수질개선	21,891,921,000	26,074,652,130	47,966,573,130	48,069,623,600	45,720,623,600		45,720,623,600	2,349,000,000		2,349,000,000	95	95	

(단위: 원)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 : 원)

회 계 별	세 입 결산액 ㉑	세 출 결산액 ㉒	차입잔액 ㉓ (㉑-㉒)	원년도 재무 상환 ㉔	다음년도 이월액						
					계 ㉕=㉑-㉔	영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93,413,124,980	209,575,829,585	83,837,295,395	-	83,837,295,395	22,108,945,190	5,654,113,070	36,845,389,760	399,839,596	18,829,007,779	
일 반 회 계	232,870,391,512	180,681,865,150	52,188,526,362	-	52,188,526,362	21,027,280,660	5,595,854,070	7,132,259,170	320,581,906	18,112,550,556	
특 별 회 계	60,542,733,468	28,893,964,435	31,648,769,033		31,648,769,033	1,081,664,530	58,259,000	29,713,130,590	79,257,690	716,457,223	
공 기 업	소 계	13,025,677,575	7,488,417,970	5,537,259,605	-	5,537,259,605	440,664,530	58,259,000	4,890,233,550	-	148,102,525
	상수도특별회계	13,025,677,575	7,488,417,970	5,537,259,605	-	5,537,259,605	440,664,530	58,259,000	4,890,233,550		148,102,525
기 단	소 계	47,517,055,893	21,405,546,465	26,111,509,428	-	26,111,509,428	641,000,000	-	24,822,897,040	79,257,690	568,354,698
	주 택 사 업	515,732,276	499,139,040	16,593,236		16,593,236					16,593,236
	의 료 보 호 기 금	389,571,485	377,605,895	11,965,590		11,965,590				8,669,430	3,296,160
	주민소득및생활안정	788,353,947	54,047,700	734,306,247		734,306,247					734,306,247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02,774,585	53,587,290	49,187,295		49,187,295					49,187,295
수 질 개 선	45,720,623,600	20,421,166,540	25,299,457,060		25,299,457,060	641,000,000		24,822,897,040	70,588,260	△235,028,240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합 계 [㉔]=(㉓+㉒)-㉑]	초과세잉금 ㉑	집 행 전 액 ㉒						차감항목 ㉓	
			소계	사업비	경상비	예비비	기타	보조금 사용잔액	현년도 채무상환	
합 계	18,829,007,779	6,188,725,510	13,040,121,865	7,293,639,073	4,815,457,437	118,152,000	812,873,355	399,839,596		
일 반 회 계	18,112,550,556	9,109,297,782	9,323,834,680	4,452,947,653	4,373,709,787	118,152,000	379,025,240	320,581,906		
특 별 회 계	716,457,223	△2,920,572,272	3,716,287,185	2,840,691,420	441,747,650	-	433,848,115	79,257,690		
공 기 업	소 계	△310,971,035	459,073,560	37,144,600	302,692,080	-	119,236,880	-		
		상수도특별회계	148,102,525	459,073,560	37,144,600	302,692,080		119,236,880		
기 타	소 계	△2,609,601,237	3,257,213,625	2,803,546,820	139,055,570	-	314,611,235	79,257,690		
		주 택 사 업	16,593,236	353,303,960		38,789,240	314,514,720			
		의료 보호 기금	3,296,160	9,633,105	9,632,480		625	8,669,430		
		주민소득및생활안정	734,306,247	△29,344,053	763,650,300	760,698,000	2,952,300			
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49,187,295	70,585	49,116,710	49,020,820		95,890			
		수 질 개 선	△235,028,240	△2,245,949,530	2,081,509,550	1,984,195,520	97,314,030		70,588,260	

2004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 번호	170
----------	-----

제출년월일 : 2005. 0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04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A)	세입결산액 (B)	B/A (%)	세출결산액 (C)	C/A (%)	차입잔액 (D)	D/A (%)
계	202,285,208	293,413,125	145.0	209,575,829	103.6	83,837,296	41.4
일반회계	167,728,667	232,870,392	138.8	180,681,865	107.7	52,188,527	31.1
특별회계	34,556,541	60,542,733	175.2	28,893,964	83.6	31,648,769	91.6

나.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B/A (%)	수납액 (C)	C/A (%)	미수납액 (D)	D/A (%)
계	202,285,208	301,065,849	148.8	293,413,125	145.0	7,652,724	3.8
일반회계	167,728,667	237,223,693	141.4	232,870,392	138.8	4,353,301	2.6
특별회계	34,556,541	63,842,156	184.7	60,542,733	175.2	3,299,423	9.5

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집행잔액 (E)	E/B (%)	
				C/B (%)	D/B (%)			
계	202,285,208	287,224,399	209,575,829	73.0	64,608,448	22.5	13,040,122	4.5
일반회계	167,728,667	223,761,094	180,681,865	80.7	33,755,394	15.1	9,323,835	4.2
특별회계	34,556,541	63,463,305	28,893,964	45.5	30,853,054	48.6	3,716,287	5.9

라.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83,837,296	22,108,946	5,654,113	36,845,390	399,839	18,829,008
일반회계	52,188,527	21,027,281	5,595,854	7,132,259	320,582	18,112,551
특별회계	31,648,769	1,081,665	58,259	29,713,131	79,257	716,457

※ 순세계잉여금=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보조금집행잔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나. 기타사항

-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붙임
-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第125條(決算)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出納閉鎖後 80日이내에 決算書 및 證憑書類를 작성하고 地方議會가 選任한 檢査委員의 決算意見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8. 3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